

토지공급기준 일부개정안

1. 제안이유

공사 전사적인 판매정책의 일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율을 민법에 규정된 법정이자(연 5%)에서 현행 시중 금리를 감안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조정하고자 함

2. 주요골자

가. 일방의 귀책사유로 매매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당초 법정이자(5%) 가산 반환에서 시중 은행의 금리를 감안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고자 함

토지공급기준 일부개정안

「토지공급기준」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8조(계약의 해제) 제5항의 “법정이자 해당액”을 “**계약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예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**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기준은 2014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제28조제5항은 시행일 이후 공고 또는 공지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부터 적용한다.

토지공급기준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행	개정안	사유
제28조(계약의 해제) ① ~ ④ (생략) ⑤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(할부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) 중 반환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납부일부터 반환 시까지의 <u>법정이자</u> 해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고,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가산여부 등을 정한다.	제28조(계약의 해제) ① ~ ④ (좌동) ⑤ 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납부한 매매대금(할부이자와 지연손해금을 포함한다) 중 반환할 금액에 대하여 실제납부일부터 반환 시까지의 <u>해약일 현재 1년 만기 정기에금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이자</u>를 가산하여 반환하고, 제3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매수인과 협의하여 가산여부 등을 정한다.	-매매계약 해제시 반환금에 가산할 이자를 시중금리를 감안하여 산정한 이자로 결정함 [사장방침 기 승인사항, 재무 전략 실-1628 ('13.10.16)]